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1. . .	
연 월 일	(제 회)	

김 산 업 의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김산업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안 제2조)
- 나.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식을 정함(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타 : 1)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2) 입법예고 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김 품종별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 제품(김과 김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 제품의 소비·유통 현황
5. 김 제품의 수출입 현황
6. 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김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김산업 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 12. 23.부터 시행한다.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단체명	설립 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שנה	מספר	שם
2010	1	אברהם
2011	2	בנימין
2012	3	גדליהו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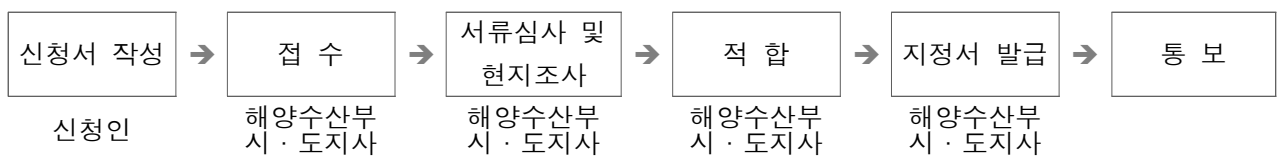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교육훈련 분야:

위 기관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단체명	설립 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שנה	מספר	שם
2010	1	אברהם
2011	2	בנימין
2012	3	דוד
2013	4	הושע
2014	5	יוסף
2015	6	משה
2016	7	נח
2017	8	שלום
2018	9	עמרם
2019	10	פנחס
2020	11	קנאן
2021	12	רוביק
2022	13	שמואל
2023	14	יחזקאל
2024	15	מנחם
2025	16	נחמן
2026	17	עזריאל
2027	18	פנחס
2028	19	קנאן
2029	20	רוביק
2030	21	שמואל
2031	22	יחזקאל
2032	23	מנחם
2033	24	נחמן
2034	25	עזריאל
2035	26	פנחס
2036	27	קנאן
2037	28	רוביק
2038	29	שמואל
2039	30	יחזקאל
2040	31	מנחם
2041	32	נחמן
2042	33	עזריאל
2043	34	פנחס
2044	35	קנאן
2045	36	רוביק
2046	37	שמואל
2047	38	יחזקאל
2048	39	מנחם
2049	40	נחמן
2050	41	עזריאל
2051	42	פנחס
2052	43	קנאן
2053	44	רוביק
2054	45	שמואל
2055	46	יחזקאל
2056	47	מנחם
2057	48	נחמן
2058	49	עזריאל
2059	50	פנחס
2060	51	קנאן
2061	52	רוביק
2062	53	שמואל
2063	54	יחזקאל
2064	55	מנחם
2065	56	נחמן
2066	57	עזריאל
2067	58	פנחס
2068	59	קנאן
2069	60	רוביק
2070	61	שמואל
2071	62	יחזקאל
2072	63	מנחם
2073	64	נחמן
2074	65	עזריאל
2075	66	פנחס
2076	67	קנאן
2077	68	רוביק
2078	69	שמואל
2079	70	יחזקאל
2080	71	מנחם
2081	72	נחמן
2082	73	עזריאל
2083	74	פנחס
2084	75	קנאן
2085	76	רוביק
2086	77	שמואל
2087	78	יחזקאל
2088	79	מנחם
2089	80	נחמן
2090	81	עזריאל
2091	82	פנחס
2092	83	קנאן
2093	84	רוביק
2094	85	שמואל
2095	86	יחזקאל
2096	87	מנחם
2097	88	נחמן
2098	89	עזריאל
2099	90	פנחס
2100	91	קנאן
2101	92	רוביק
2102	93	שמואל
2103	94	יחזקאל
2104	95	מנחם
2105	96	נחמן
2106	97	עזריאל
2107	98	פנחס
2108	99	קנאן
2109	100	רוביק
2110	101	שמואל
2111	102	יחזקאל
2112	103	מנחם
2113	104	נחמן
2114	105	עזריאל
2115	106	פנחס
2116	107	קנאן
2117	108	רוביק
2118	109	שמואל
2119	110	יחזקאל
2120	111	מנחם
2121	112	נחמן
2122	113	עזריאל
2123	114	פנחס
2124	115	קנאן
2125	116	רוביק
2126	117	שמואל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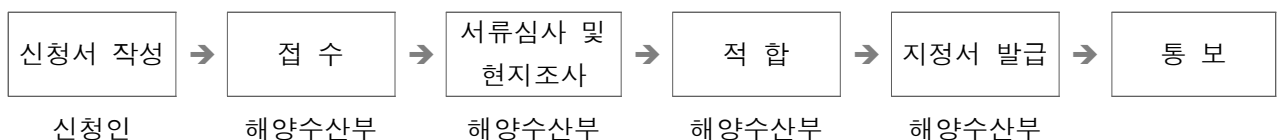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력훈련 분야:

위 기관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주소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출연기관 ☐ 연구기관 ☐ 그 밖의 기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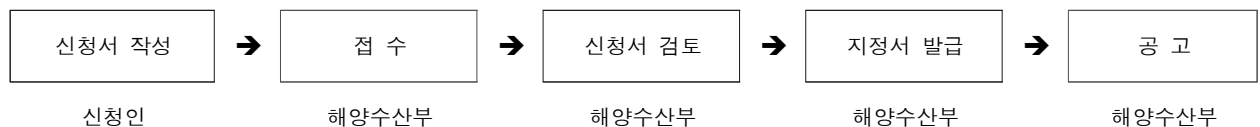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계획 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수수료 없 음
------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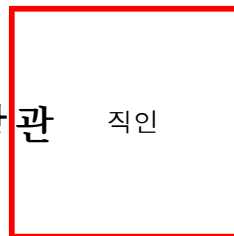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위 기관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1.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사유:
2. 김산업진흥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기 타

붙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팩스)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